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586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가단508227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가칭)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사업자이다.
- 3) D과 원고는 2021. 6. 18.경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를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여대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부터 30일 이내1)'로 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차량번호 1 생략) 유압기중기(형식 GR600N)가 임대차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건설기계 대여 등

-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2021. 6.부터 2021. 11.까지 매월 말일에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1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2) D은 위 약정한 대여대금 지급일이 경과한 2021. 11. 9. 33,000,000원, 2021. 11. 30. 22,000,000원의 합계 55,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될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21. 6. 4. 피고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액을

103,811,880원(이후 2021. 6. 24. 보증금액을 100,415,260원으로 감액하였다), 보증기간 2021. 5. 24.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하였다. D은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내지 8,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대여대금 58,630,000원(= 113,630,000원 - 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보증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원고의 보증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2) 에 터 잡아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개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해당한다.

나) 개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단계에서 특정됨과 달리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보증서에 보증채권자가 기재되지 않음에 따라 아래 약관 제3조가 정하는 바와 같은 보증채권자의 확정 필요하다. 이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개별계약”이라 함은 앞면 기재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말합니다.

3. “전자적 계약등록”이라 함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채무자가 조합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보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별계약 내용을 등록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개별확정계약”이라 함은 보증채권자 및 채무자가 전자적 계약 등록한 계약내용을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권자의 확정)

① 개별계약을 체결(변경 계약 체결을 포함합니다)한 채무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현장 별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기재 계약이행기일까지 조합의 건설기계 보증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계약등록을 하여 조합이 심사를 거쳐 해당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별확정계약에 대한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또는 게시한 때에 보증채권자로 확정됩니다.

1.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발송
2.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
3. 조합의 홈페이지 또는 건설기계 보증관리시스템에 게시
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게시

제4조(보증책임의 범위)

조합이 각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개별확정금액을 한도로 개별확정계약상 대여계약기간 동안 실제 작업함으로써 발생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중 미수령액으로 합니다.

제12조(면책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보증채권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공사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 대여계약의 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때

다) D은 2021. 12. 3. 16:05경 피고의 건설기계 보증관리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전자적으로 등록(승인 요청)하였고, 상대방인 원고는 같은 날 16:15경 계약 내용을

확인(승인)함으로써 전자적 계약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건설기계 보증관리시스템에 그 전자적 계약등록 내용을 게시하였다.

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대표자	계약기간 지급기준일	보증기간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잔액]
C회사 A	타워크레인 (차량번호 2 생략) C회사 A	2021. 6. 18. ~ 2021. 11. 30 월말일30일이내	2021. 6. 18. ~ 2021. 11. 30	113,630,000 83,705,340 [83,705,340]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D이 2021. 12. 3. 피고의 건설기계 보증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등록(승인 요청)하고,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확인(승인)하여 전자적 계약등록을 마치고 피고가 이를 건설기계 보증관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는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첫 기일인 2021. 7. 31. 이후로 계속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러한 불이행 상태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얻은 2021. 12. 3.까지도 해소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얻기 전부터 D이 원고에 대한 대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9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한편 원고는 D의 대여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시기는 이 사건 공사의 종기인 2021. 11. 30. 이후부터 30일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양환승, 판사 석준협

1) 갑 제1호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을 지급기한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D은 이에 터 잡아 '매월 말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건설기계 보증관리시스템 정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과 원고는 지급기준일을 '월말일 30일 이내'로 각 등록 및 확인하였다.

2)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